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9
----------	-----

제출년월일 : 2000년 2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개정이유

- 한국자산관리공사,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 등 국가정책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일부 정책목적이 달성된 분야는 세제지원을 폐지하며, 또한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의 조문정리와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골자

1. 세제지원을 위한 규정 확대 또는 신설

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확대

-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함에 있어 국가유공자인 중상이자 개인이 취득하는 부동산만 감면하던 것을

⇒ 중상이자 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면제토록 함 (안 제2조 제1항)

-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동차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의 등록 차량뿐만 아니라

⇒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명의로 등록(단,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시에 한함)하는 경우에도 도세를 면제하되,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도세를 추징토록 함

(안 제2조 제3항)

②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확대

-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 차량뿐만 아니라
 - ⇒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명의로 등록(단,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시에 한함)하는 경우에도 도세를 면제하되,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도세를 추징토록 함 (안 제4조 제1항)

③ 중고건설기계매매업자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는 판매목적으로 중고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것이며, 또한 현재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 ⇒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을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안 제13조 제2항)

④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감면기한 2000년말)으로 감면하는 것으로
 - ⇒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 기업으로부터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28조의6)

2. 세제지원 규정 폐지

①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 폐지

-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였으나

⇒ 주차장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오히려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감면규정을 폐지하여 과세전환토록 함 (현행 제12조)

②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감면규정 폐지

- 도시가스사업자의 초기 시설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였으나

⇒ 도시가스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므로 감면규정을 폐지하여 과세전환토록 함 (현행 제21조)

3.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이 허가제에서

⇒ 등록제로 됨에 따른 조문 정리

(안 제2조 제4항·제4조 제2항·제13조 제1항)

-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감면된 도세를 추징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하도록 관련 법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 임대주택법 제12조로 관련법규의 조문을 명확히 함

(안 제15조 제1항)

○ 관련법령의 제목 및 관련조문 개정에 따른 정리 등

- 교육법을

⇒ 교육기본법으로 (안 제10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안 제11조)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 (안 제19조 제1항)

- 외국인투자촉진법을

⇒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함 (안 제28조의5)

조례(안) : 별 첨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참고자료 : 별 첨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로 한다.

제2조제3항중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을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며, “취득”을 “감면신청”으로 하고, 동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추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각각 한다.

제4조제1항중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을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취득”을 “감면신청”으로 하며, 단서조문중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추징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각각 한다.

제10조중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한다.

제11조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2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5조제1항제4호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 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제19조제2항중 “공장이외의 용도”를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8조의5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동법 제121조의2 제4항”으로 하고, 단서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6(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동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 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구조조정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법인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등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대상기업이 구조조정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8조의6의 신설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p> <p>②(생략)</p> <p>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한다.</p> <p><단서 신설></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p> <p>②(현행과 같음)</p> <p>③</p> <p>-----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p> <p>-----감면신청-----</p> <p>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p>			

현행	개정안
<p>1. ~ 4.(생략)</p> <p>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u>허가</u>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생략)</p> <p>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u>허가</u>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p> <p>4. (생략)</p>	<p>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추징한다.</p> <p>1. ~ 4.(현행과 같음)</p> <p>④----- ----- -----</p> <p>1. ----- -----<u>등록을 한</u>----- ----- ----- -----</p> <p>2. (현행과 같음)</p> <p>3. -----<u>등록을 한</u>----- ----- -----</p> <p>4. (현행과 같음)</p>
<p>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u>직계존·비속</u>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p>	<p>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 ----- -----<u>장애인의 직계</u> -----<u>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u>의</p>

현행	개정안
2. (생략)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u>허가를 받은</u>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생략)	2. (현행과 같음) 3. -----등록을 한----- -----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u>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u> · 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제10조(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u>교육기본법</u> ----- ----- ----- ----- ----- <단서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u>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시의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하거나 할부판매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u>	제11조(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u>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3조</u> ----- ----- ----- ----- ----- -----
제12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u>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으로서</u>	<삭제>

현행	개정안
<p>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및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차시설 착공일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p>②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p>	

현행	개정안
<p>제19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p>	<p>제19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p>
<p>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p>	<p>1. <u>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u></p>
<p>2. (생략)</p>	<p>2. (현행과 같음)</p>
<p>3.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u></p>	<p>3.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u></p>

현행	개정안
<p>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은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정한다.</p>	<p>제121조의2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동법 제121조의2제4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 -----</p>
<p><신설></p>	<p>제28조의6(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동법 제26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 (이하 "구조조정법인등" 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 법인 등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 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조합이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p>

현행	개정안
	<p>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대상기업이 구조조정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p>

참 고 자 료

- 지방세법 (부분발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령 (부분발취)
-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령 (부분발취)
-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 (부분발취)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부분발취)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부분발취)
- 조세특례제한법 (부분발취)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관한법률 (부분발취)
- 산업발전법 (부분발취)
- 국가유공자자활용사춘 관리규정 (부분발취)
- 행정자치부 (안) 사본

관련법규(부분발취)

○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면허등)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계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 :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2. 구역여객자동차운수사업 :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블도우저, 굴삭기 등 26종임)
2. 건설기계사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폐기업을 말한다.
5. 건설기계매매업이라 함은 중고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신고등) ①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5조(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등)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하는 자는 건설기계매매업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임대주택법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제한) 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간의 매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등) ①법 제1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의 규모와 입주대상자 등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의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4.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년

②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 나. 가목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후 당해 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의 2분의 1(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개시후

최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한다)이 당해 임대주택의 매매에 합의하여 임대주택매각허가신청서에 당해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매각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서류, 매각가격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산지가공산업의 육성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에서 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이하 “加工業者”라 한다)에 대하여 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가공품의 수출촉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아파트형 공장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아파트형 공장에의 입주) ①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정보통신산업, 영화제작업, 음반·비디오물·게임물제작업 등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3(아파트형 공장)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3층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2.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제121조의5(조세의 추정)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2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의 주식 등의 비율이 감면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 관한법률**

제6조(설립)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촉진과 부실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26조(업무)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5. 비업무용자산 및 합병·전환·정리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의 자산의 관리·매각, 매매의 중개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인수정리

○ **산업발전법**

제14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①다음 각호의 사업중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2이상의 사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2.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
4. 구조조정대상기업이 매각하는 영업 또는 자산의 매입
5.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성업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 (이하 “부실채권”이라 한다)의 매입
6. 기업구조조정조합 자금의 관리·운영
7.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화의·회사정리·파산의 절차의 대행
8. 기업간 인수·합병 등의 증개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①전문회사와 전문회사외의 자가 출자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등을 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조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당해 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관리규정 (부분발췌)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사촌”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용사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장이 지정 승인하는 집단 마을을 말한다.

제3조(용사촌의 요건) ①용사촌의 설립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 :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공상 균경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주거 : 용사촌은 제1호의 회원 20인이상이 동일 행정구역(지방자치법상의 “동” 또는 “리”를 말한다)에 건립 또는 구입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집단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행 정 자 치 부

우110-760/중로구 세종로77-6종합청사1412호/전화3703-5058/전송3703-5552
 세제과 과장 김 대 영 조정담당 김 한 기 사무관 김 주 이

문서번호 세제 13400-1222

시행일자 '99. 12. 8.

경유

수신 충청북도지사

참조 재무과장

선 람	과장	36	지 시	
접 수	일자 시각	...	결 재	
	번호	1369		
	처 리 과	세정담당	공 람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목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계획 및 개정(안) 통보

1. 각 시·도 감면조례 담당자 회의(99.12.1~12.3)에서 확정된 감면조례 정비계획 및 개정(안)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 바랍니다.

2. 다만, 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특별·광역시세 및 도세 제22조)에 대한 폐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가스사업의 착수시기가 다르므로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폐지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특별·광역시세 및 도세 제12조, 구세 제10조 및 제11조, 시·군세 제15조 및 제16조)에 대한 폐지 또한 급격한 과세전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폐지시기·폐지대상 및 과세전환율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개정요구가 있었으나 현행대로 존치키로 한 조례와 그 사유를 숙지하여 해당 조례의 해석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첨 부 : 1. 지방세 감면조례 정비 계획 1부

2.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수신처 : 나01~07, 10~18

전결 세제과장 김대영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를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하며, “취득하는”을 “감면신청하는”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추징한다.

제4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 본문중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를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하고, “취득하는”을 “감면신청하는”으로 하며, 단서중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추징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10조 본문중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2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제1항 본문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제4호중 “임대주택법에”를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공장이외의 용도로”를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로 한다.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제22조를 삭제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감면)①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동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구조조정법인등”이라 한다)으로 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법인등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대상기업이 구조조정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0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본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제9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동법제121조의2제4항”으로 하고, 단서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12조제3항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제30조의 신설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현행	개정안
<p>1. ~ 4.(생략)</p> <p>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u>허가를 받은</u>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생략)</p> <p>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u>허가를 받은</u>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p> <p>4. (생략)</p>	<p><u>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추징한다.</u></p> <p>1. ~ 4.(현행과 같음)</p> <p>④----- ----- -----</p> <p>1. ----- -----<u>등록을 한</u>----- ----- ----- -----</p> <p>2. (현행과 같음)</p> <p>3. -----<u>등록을 한</u>----- ----- -----</p> <p>4. (현행과 같음)</p>
<p>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u>직계존·비속명</u>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p>	<p>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 ----- -----<u>장애인의 직계</u> -----<u>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u></p>

현행	개정안
<p>2. (생략)</p> <p>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u>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u></p> <p>4. (생략)</p>	<p>2. (현행과 같음)</p> <p>3. -----<u>등록을 한</u>----- ----- -----</p> <p>4. (현행과 같음)</p>
<p>제10조(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u>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u></p> <p><단서 생략></p>	<p>제10조(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u>교육기본법</u> ----- ----- ----- -----</p> <p><단서 현행과 같음></p>
<p>제11조(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u>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시의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하거나 할부판매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u></p>	<p>제11조(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u>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3조</u>----- ----- ----- ----- -----</p>
<p>제12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u>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으로서</u></p>	<p><삭제></p>

현행	개정안
<p>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및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2. 주차시설 착공일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3.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p>②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p>	

현	행	개 정 안
		<p>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동법 제26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구조조정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법인 등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p> <p>②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대상기업이 구조조정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p>
<p>제〇〇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은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p>	<p>제〇〇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동법 제121조의2제4항 ----- ----- ----- 조세특례제한법</p>	

현행	개정안
<p>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정한다.</p>	<p>제121조의5제3항의 ----- ----- -----</p>